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9일
-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일

3. 제안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임사무 신설 등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 설 : 2건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사무 신설 2건>

-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

- ① 폐기물처리의 처리 기준 등 ②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그 밖의 개정사항 : 2건

<위임사무명 변경 : 1건>

- (환경정책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1건

가.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오기에 따른 근거법령 정정 : 1건>

- (기후대기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5.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에 따라 시도사무에서 시군구로 위임된 사무와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고 그밖에 근거 법조항 개정으로 사무명 변경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폐기물관리 관련 업무중 폐기물 처리기준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둘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추가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변경하고,

셋째, 오기에 따른 근거법령 정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정정하는 것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위임된 사무의 신설 및 위임사무명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